I-SEOUL-U

제280회 시의회 임시회 교 통 위 원 회 '18.4.5(목) 10:00

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8년 1/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2018. 4. 5.

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(도시철도국)

2018년 1/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 - 시장은 <u>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</u>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<u>그 사용 내역을</u>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(단위: 백만원)

□ 예비비 집행현황

사업명	집행액	집행내역	집행사유
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	2,125	 ○ 지 출 일 : '18.03.20. ○ 지급대상 : ㈜대우건설 ○ 지출사유 : 판결금 지급 	○ 1심 원고(서울시)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우리시에 납부된 가지 급금 334억원을 서울시 공금계좌에 예치한 후, 2심 패소로 기수령한 가지급금 및 이자에 대해 반환의무가발생 ○ 서울시 공금계좌 이자율(1.8%)과 가지급금 반환 이자율(5%) 간의 차이로 반환 차액이 발생하여 예비비를활용하여 판결금(가지급금 및 이자)지급
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자문 용역	165	 지출일: '18.03.09. 지급대상: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 지출사유: 판결금 지급 	 원심판결이 가집행을 명한 용역비 지급의무에는 연15%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있고, 상고심 판결 선고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붙임: 1.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소송개요 1부.

2.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 소송개요 1부.

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소송개요

□ 공사개요

○ **위** 치 : **구로구 온수역**(서울7호선) ~ **부천시 상동** ~ **부평구청역**(인천1호선)

○ 사업규모 : 총연장 10.2km. 정거장 9개소

(서울시 0.44km, 부천시 7.39km, 인천시 2.37km)

○ 사업기간 : 2004.12. ~ 2012.12.

○ **총사업비** : **1조 1.825억원** (국비 60%, 지방비 40%)

(서울시 266억원, 부천시 8.126억원, 인천시 3.433억원)

□ 사건개요

○ 사건번호 : 2016다43872 손해배상 청구의 소(대법원)

○ 당사자

- 원 고 : 서울특별시

- 피 고 : 대림산업, 현대건설, 대우건설, 삼성물산

○ 청구취지

-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
- 서울시는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담당 4개 공구(701~704) 건설사(피고)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

□ 추진경위

○ '10.07.23. : 소장접수

○ '14.01.10. : 1심 선고(원고 승소)

○ '14.01.17. : 가지급금 예치

○ '14.12.22. : 가지급금 일부 사용

· 공사대금청구소 2심패소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 181억

○ '16.09.08. : 2심 선고(원고 패소)

○ '16.09.23. : 3심 상고

○ '16.09.~'17.01 : 가지급금 반환 (1~4차)

○ ~ '18.02. : **가지급금 반환 협의** (부천시, 서울시)

○ '18.03.20. : 가지급금 반환 완료(5차)

□ 소송결과

구 분		1 심 (2011가합26204)	2 심 (2014나9467)	3심
 선고결과		원고일부승소	원고패소	진행중
선 고 일		'14.1.10	'16. 9. 8	
적	민법 제766조 제1항 (3년 단기소멸시효)	공정위의 정식 서면 의결이 있었던 날 기준 - 공정위 의결: '07.7.25. - 소송제기: '10.7.23.	좌동	
용법	지방재정법 제82조 (5년 소멸시효)	'05.7.22. 이후 지출 건에 대해 손해배상 적용 ('05.7.22. 이전 지출 건은 소멸시효 완성)	1차 계약일('04.12.30)을 기준으로 적용 ※ 소멸시효 완성	
판결금		33,383백만원 ('14.1.17 가지급금 예치)	원고반환 (이자 5%)	

□ 가지급금 반환현황

(단위 : 원)

	구 분	계	원 금	이 자	비고
 반환대상액		38,147,036,548	33,383,365,030	4,763,671,518	
반 환 액	소 계	36,021,610,200	31,375,131,488	4,646,478,712	
	1 1 六 ('16.9.21)	16,123,158,530	12,621,386,634	3,501,771,896	보관 중 가지급금 (334-181)+0지(1.8%)
	2차 ('16.9.30)	11,000,000,000	9,999,145,586	1,000,854,414	부천시 사용분 이자(5%)포함
	3차 ('16.10.20)	611,028,797	581,541,584	29,487,213	서울시 사용분 이자(5%)포함
	4차 ('17.1.10)	8,287,422,873	8,173,057,684	114,365,189	부천시 사용분 이자(5%)포함
	5차 ('18.3.20)	2,125,426,348	2,008,233,542	117,192,806	

※ 건설협약서(2005.1)에 의한 분담비율 : 서울) 2.8%, 부천) 97.2%

□ 향후계획

법률지원담당관과 협조하여,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하여 3심 소송에 적극 대응

작 성 자 도시철도계획부장 : 김진팔 🕿 772-7020 계획과장 : 최병훈 🕿 7021 담당:이경훈 🕿 7133

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조사 분석자문 용역비 소송개요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2018다219697 용역비 청구의 소(대법원)
 - 1심(2016가단5060993 서울중앙지방법원)
 - 2심(2017나16791 서울중앙지방법원)

○ 당사자

- 원 고 :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
- 피고/피고보조참가인 : ㈜수성엔지니어링/서울특별시(기술심사담당관)

○ 청구취지

-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상세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용역을 대한지질공학회(원고)가 수행
- 대한지질공학회(원고)의 보고서가 도로함몰 원인에 대한 객관적·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서울시에서 원인조사용역을 해지하고 용역비 2억원 중 7,300만원만 지급함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1억 2,700만원 지급 소송 제기

〈용역개요〉

○ 용 역 명 :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

○ 용역내용: '14.8.5. 지하철 919공구 건설공사 중 발생한 석촌지하차도

도로함몰 발생원인에 대한 정밀 원인조사 · 분석

○ 용역기간: '14.10.01. ~'15.12.31.

○ 용 역 비 : 200백만원

○ 용 역 사 :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

○ 용역주관 : 서울시(기술심사담당관)

○ 계약체결 : 수성엔지니어링

※ 조속한 용역시행을 위하여 지하철 919공구 전면책임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에서 대한지질공학회와 계약 체결토록하여 용역시행

□ 추진경위

○ 2016.01.29. : 용역계약 해지 ※ 착수 : '14. 10. 1.

16.03.22. : 소송제기(원고: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)

○ 16.06. ~ 10. : 1 ~ 6차 변론

○ 2017.02.16. : 1심 선고(원고 승소)

○ 17.03.08.: 항소장 제출(2심)

○ **17.06.** ~ **11.** : **1~6차 변론**(준비 및 참고서면 7회 제출 및 2명 증언)

○ 17.06. ~ 12. : 1차. 2차 원인조사 참여 전문가 등 의견서 제출

※ 정상섬(연세대), 김상환(호서대), 최항석(고려대), 신종호(건국대), 우종태(경복대), 이채규(구조물연구원 대표), 김동식(석촌지하차도공사 소장), 김홍길(기술심사담당관)

○ 2018.02.05. : 2십 선고(원고 승소)

○ 18.02.21. : 상고장 제출

○ 18.03.09. : 판결금 지급(165,088천원)

□ 소송현황 : 3심 진행

구 분	1 심	2 심	3 심
선고결과	원고승소	원고승소	진행중
선 고 일	'17. 2. 16	'17. 2. 16	
판결요지	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잔여	불충분하게 수행하거나 허위의 연구결과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, 이를	

□ 판결금 지급현황

(단위 : 워)

구 분	계	원 금	이 자	비고
판결금	165,088,870	127,000,000	38,088,870	

※ 지급사유 : 원심판결에는 연15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□ 향후계획

작성자

○ 법률(계약법 등) 위반 내용을 부각하여 3심 소송에 적극 대응

도시철도토목부장 : 이도헌 🕿 772-7040 궤도과장 : 최진규 🕿 7045 담당:정중규 🕿 7241

기술심사담당관 : 김홍길 ☎ 2133-8550 토목심사팀장 : 조임남 ☎ 8571 담당:유현선 ☎ 8562